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대학원과정 학사운영 방침

2026. 03. 16 개정

(학과 대학원 세미나) 기후에너지시스템세미나 I, II 또는 기후·에너지특강 I, II 중에서 석사과정은 1과목, 박사과정은 2과목을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위과정 중에 이들 과목이 영어과목으로 2과목 이상 개설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세미나 교과목이 정규 강의로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도 학과에서 세미나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연사를 초청한 교수가 담당 교수로서 세미나를 운영한다. 세미나 운영 시 학과 조교 등이 출석을 확인하며, 외부 연사 초청 세미나에 10회 이상 출석한 경우 해당 세미나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통합과정 자격시험) 통합과정의 자격에 대한 시험은 제10조의 석사과정 종합시험에 준하여 실시한다. 평균학점은 자격시험 시행 당시 학기까지의 평균으로 하며, 3.7 이상으로 한다.

(외국어시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영어 시험의 경우 공인어학능력 시험 혹은 대학원 영어특강 평가시험에 대한 기준 점수를 만족하여야 한다.

① 공인어학능력 시험

구분	TOEFL(석/박)			TOEIC (석/박)	TEPS	IELTS
	CBT	IBT	PBT			
기준점수	207	76	520	700	600	5.0

② 대학원 영어특강 평가시험 상위 70% 성적

(종합시험) 시험과목은 본 학과 개설과목 중 수강한 과목에 한하며, 세미나 과목과 실습 위주의 기상계산 등의 과목은 제외한다. 대상 학생들이 출제 교수를 선택하고(석사 2인/박사 및 통합과정 3인), 각 출제교수는 3문제 이상 5문제 이하로 출제하며, 학생은 2문제를 선택하며 답안을 작성한다. 다만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절 제43조(출제) "각 출제위원은 각 시험별로 원칙적으로 학생 1인에 대하여 1과목을 초과하여 출제할 수 없다" 항목에 관하여, 원칙의 예외 사안(예: 1과

목 초과 출제)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가부를 결정한다.

(논문지도교수) 석사학위, 박사학위 및 통합과정 학생의 논문지도교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생의 제1학기 이전에 정한다. 석·박사학위 및 통합과정의 지도교수는 학과 전임 또는 겸임 교수로 한다. 박사학위 논문지도 위원회는 총 5인으로 구성되며, 이 중 3인 이상을 본교 전임 교원으로 구성한다.

(논문제출 자격 취득)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두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이때 논문의 내용은 박사과정 연구 주제와 관련이 된 것만을 인정한다.

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의 자격으로 SCI(E)급 학술지 논문 1편 이상 발표

나. 가에 상응하는 것으로 논문지도위원회가 인정하는 결과물

석사학위 논문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세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이때 논문의 내용은 석사과정 연구 주제와 관련이 된 것만을 인정한다.

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의 자격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재 국내 학술지 논문 1편 발표

나. 최종심사일 전 SCI(E)급 저널 투고를 목적으로 작성한 논문 초고 1편 제출, 단 학위수여일 이전에 투고 후 심사/교정 과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한 자에 한해 제1저자로 인정함.

다. 가에 상응하는 것으로 논문지도위원회가 인정하는 결과물

논문의 발표란 투고 후 심사를 거쳐 게재가 승인되었거나, 이미 게재되어 인쇄본이 나온 경우를 의미한다.

(논문등록) 전일제로 연구하는 박사과정 학생은 수료 후에는 논문등록을 하여 박사과정 학생의 신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대학원 세미나) 석·박사학위를 청구하는 학생은 연구내용을 논문심사위원을 포함한 학과 구성원에게 공개로 발표하고 논문심사위원에게 최종심사를 득한다. 연구내용 중간발표의 경우에는 석사과정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내부 세미나 시간을 이용한 공개 세미나로 같음하고, 박사과정은 논문심사위원회에 대한 발표를 원칙으로 한다.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논문심사위원회의 논의를 통하여 해당 학생이 구술시험에서 불합격 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대학원 시행세칙 48조에 따라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에 석사학위의 경우 1회 이상, 박사학위의 경우 2회 이상 심사하여야

한다.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제도)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0조의3에 따른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제도 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운영한다.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교과목은 두지 아니한다.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은 본교 논문 등급을 기준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재 등급 이상의 논문 중 그 저자 목록에 지도교수가 포함된 것만을 인정한다.